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559호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안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재검토기한)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고시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4일까지로 한다.</p>	<p>제12조(재검토기한) <u>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p>